

등록번호 제 호

안전조업교육(정기·특별) 이수증

1. 성명:

2. 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
(조업보호본부장)

직인

※ 이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, 분실 시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.

안전조업교육 이수 내용

구분(정기·특별)	교육일	교육 이수 확인자		인
		소속	성명	
		소속		
		직급		
		성명		
		소속		
		직급		
		성명		
		소속		
		직급		
		성명		
		소속		
		직급		
		성명		
		소속		
		직급		
		성명		
		소속		
		직급		
		성명		
		소속		
		직급		
		성명		
		소속		
		직급		
		성명		
		소속		
		직급		
		성명		